

정 관

드림비전 문화교류협회

2025.0219

드림비전 문화교류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드림비전 문화교류협회(이하 "본 단체"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DV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약칭 DV CEA)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17(한강로3가,센트럴파크) 제타워동1201호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국내외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 및 기독교선교 활동
2. 국내외 지역사회를 위한 공연, 전시, 강연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봉사단 운영 및 관련 교육 활동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사업
5. 국내외 청소년 및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준회원: 본 단체의 활동을 후원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 본 단체에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단체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장) 1명
2. 이사 3명
3. 감사 1명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장)는 본 단체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본 단체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3. 감사는 본 단체의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운영)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결정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참석회원으로 개최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의 개정
4.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13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본회는 이사 3인 내지 5인을 둘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3.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의 과반수참석으로 개최한다.
4. 이사회는 본 단체의 주요 운영 및 사업 진행을 논의·결정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재정의 운영)

1.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 회비, 후원금, 기부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가 관리하며,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15조(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 및 기타

제16조(해산 및 청산)

1.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제17조(정관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사항)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함.

제정일: 2025년 2월 19일